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89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 박상웅 · 김도읍 · 김민전

박덕흠 • 이인선 • 유용원

정연욱 · 강승규 · 김미애

이철규 · 임종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 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300억원"을 "300억원[「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6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0억원"을 "400억원(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60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1항을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초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	
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	
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	
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	
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1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400억원

3. (생 략) ② ~ ⑩ (생 략) <신 설>

<신 설>

300억원[「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60 0억원]

2. -----

<u>400억원(인구감소지역에서 가</u> <u>업상속하는 경우에는 600억</u> 원)

- 3. (현행과 같음)
- ② ~ ⑩ (현행과 같음)
- ① 제1항을 적용할 때 인구감 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 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가 업상속 대상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상

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 1항에 따라 초과 공제받은 금 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 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 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 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